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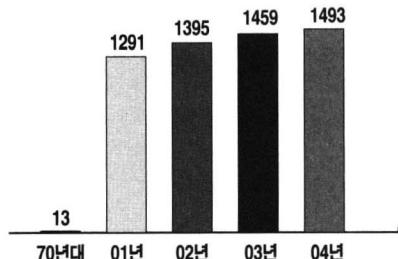
저공해자동차 보급정책

● 환경부 김상배 교통환경기획과장 ●

I. 교통공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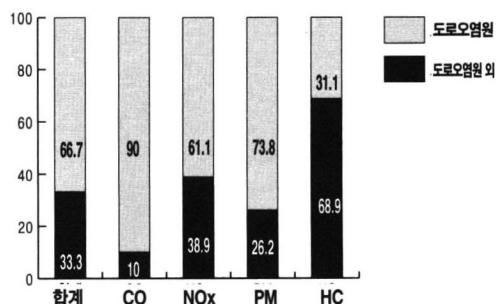
· 자동차 등록현황

- 1970년대에는 13만대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115배가 증가하여 2004년말 현재 1,500만여대가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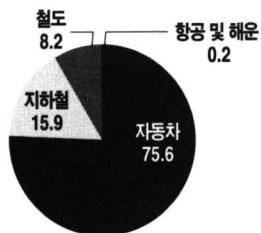
· 자동차 대기오염 현황

- 2002년 기준으로 전국 대기오염배출량 중 CO는 79.4%, NOx는 42.4%, 미세먼지 (PM10)는 43.4%가 자동차에서 배출
- 이러한 비율은 수도 서울의 경우 훨씬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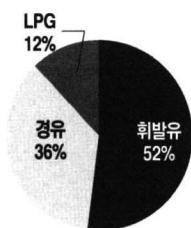
· 국내여객 수송분담율

- 2004년 현재 자동차 75.6%, 지하철 15.9%, 철도 8.2% 등 자동차 의존율이 높은 실정



· 연료별 자동차 등록비율

- 휘발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꾸준히 증가추세



II. 교통공해정책 여건변화

◇ 경유승용차 국내시판(05년)

- 그동안 우리나라 경유차로 인한 오염의 심각성 때문에 경유승용차 시판 불허
- 국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05년부터 경유승용차 판매 허용
-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경유차 환경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에너지 상대가격 개편』등의 보완대책 병행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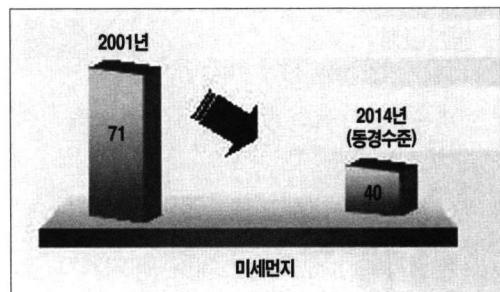
◇ 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자동차 본격 보급

- 기존의 천연가스 자동차 외에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도 재정지원(04년 부터)
- 전기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가 양산되는 시점에는 재정지원보다 세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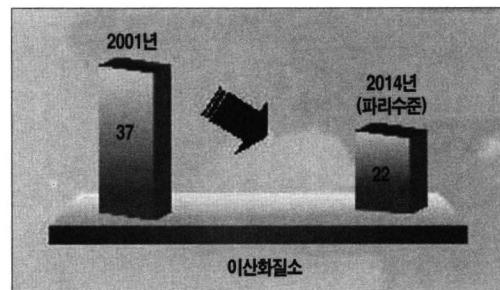
추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

-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의 대기질을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사업장, 교통 등 오염원별 배출량 삭감계획 추진→맑은날 남산에서 인천앞바다까지의 시정거리 확보



총 6조원의
재원투자



-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05.1.1)

◇ 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 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출시가 허용됨에 따라 이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의 급격한 증가를 예방할 필요
- 휘발유 : 경유 : LPG의 상대가격비를 현재 100 : 72 : 54에서 100 : 75 : 50 (05년7월)
→100 : 80 : 50 (06년7월)→100: 85 : 50 (07년7월)로 단계적 개편
- 05년도 유로-3 : 유로-4 경유승용차의 출시비율을 50:50 이상으로 유지

-수도권내 초저환경유(30ppm) 조기보급

혼잡통행료 등
· 자동차 연료품질 관리

III.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 생산전 단계

-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가스보증기간 설정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부착
- 저공해자동차 개발보급

◇ 생산단계

- 기준준수여부 검사
- 제작자동차 출고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운행단계

- 결합확인검사 및 결합시정명령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정기검사, 정밀검사, 수시점검)
- 공회전 규제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DOC) 부착사업

◇ 배출가스 저감

- 지속기능한 교통정책 시행
- 연료가격정책,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실현,

III-1.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 목적 및 설정항목

-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전적 저감을 위해 제작단계에서 배출기준을 설정
- 휘발유 및 가스차 : CO, HC, NOx, 알데하이드
- 경유차 : NOx, PM, CO, HC

◇ 배출허용기준 설정방향

- 현재 선진국에 비해 3~5년 뒤져있는 기준을 06년경에는 1년 늦게 적용하는 것으로 강화
- 휘발유 및 가스차는 미국의 기준, 경유차는 EU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정
- 06년부터 휘발유차는 미국의 ULEV 수준, 경유차는 EURO-4 수준으로 강화 예정
- 향후 선박,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으로 확대

III-2.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점

연료	기준	차종	2006	2007	2008	2009	시험방법
휘발유	LEV2 ULEV (CAL)	소형승용	25%	50%	75%	100%	CVS 75 모드
		기타	신차	기존차			
엘피지	LEV2 ULEV (CAL)	소형승용	신차		기존차('07.7)		CVS 75 모드
		기타	신차	기존차			

연료	기준	차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유	EURO 3	경·승용1				모든차			
		승용2(<1.7t)				모든차			
		승용2·3 화물1·2	신차('02.7)		기존차				
		승용4·화물3		신차		기존차('04.9)			
	EURO 4	경차·소형승용					모든차		
		소형승용(2.5초과) 소형화물						신차	기존차
		중형승용·화물							
		(초)대형승용·화물					신차('06.10)	기존차	

III-3. 중장기 배출허용기준 설정방향

1. 휘발유자동차

- ▶ FAS(Fleet Average System) 제도 도입 검토

2. 경유승용차

- ▶ EU와 동일한 시점(2010년경)과 수준(유로-5)으로 시행 검토

3. 경유상용차

- ▶ 유로-5 기준이 설정(08.10 시행)되어 있어 05년내 국내기준 확정 필요

4. CO₂ 배출기준 설정

- 유럽은 08년, 미국은 09년부터 시행 예정
- ▶ · 국내의 경우 2010년 이후로 기준 설정 검토
- 기준 설정방식 미국식과 유럽식을 복합적으로 수용

5. 극미세입자 기준 설정

- ▶ · 유럽에서 2010년부터 경유승용 및 소형화물 적용을 목표로 작업중
- 국내기준은 2010년부터 경유승용차에 적용 검토

III-4. 운행단계 배출가스 관리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OBD) 부착시행

- OBD(On-Board Diagnostic)란?
- ☞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오작동으로 배출가스가 일정수준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계기판의 경고등이 점등되도록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
- 05년도부터 부착의무 도입
- 휘발유차의 경우 OBD-II, 경유차의 경우 EOBD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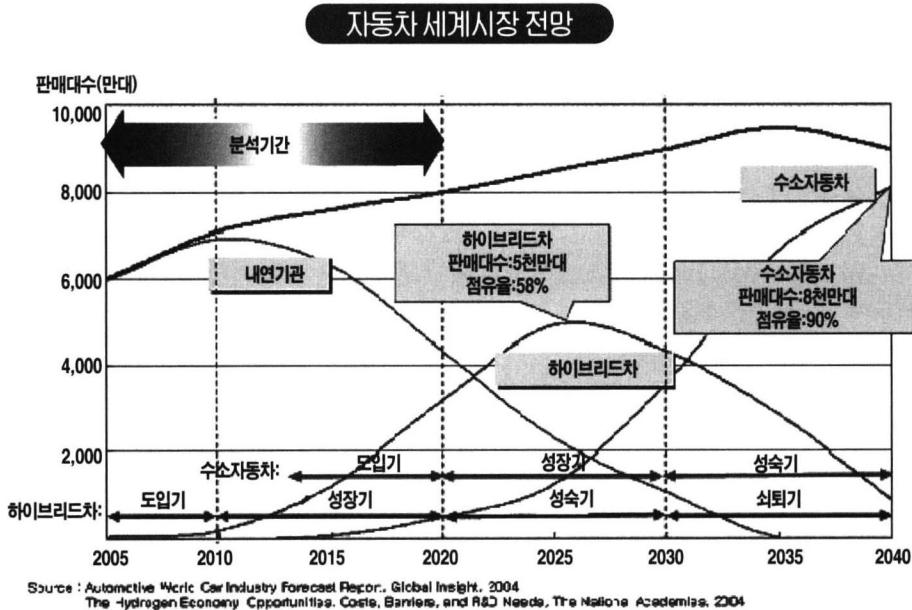
◇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DOC) 부착시행

- 사업목적 : 운행중인 경유차의 미세먼지(PM) 배출저감을 위해 차량 10대이상 보유사업자 및 매연취약계층 이용 자동차(유치원, 양로원 등)를 대상으로 실시
- ☞ DPF(매연여과장치) : 차령 3~7년의 대형버스와 트럭
- ☞ DOC(산화촉매장치) : 차령 6~8년의 중소형버스, 트럭 및 승합차
- 05년도 예산 : 지방비 포함 1,984억원(47,000대)
- 지원금액 : DPF 700백만원, DOC 98만원

III-5. OBD 의무장착 적용시점

연료	차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휘발유	소형승용			100%	100%	100%	100%
	경자동차	10%	30%				
	중형승용 소형, 중형화물		신차	기존차			
	대형, 초대형승용 대형, 초대형화물		신차	기존차			
경유	경자동차 소형승용		신차	기존차		신차	기존차
	중형승용 소형, 중형화물			신차	기존차		
	대형, 초대형승용 대형, 초대형화물					신차	기존차

IV. 저공해자동차 보급



IV-1. 저공해자동차 종류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제1종에서 제3종까지 등급을 구분

제1종

- 오염물질의 배출이 전혀 없는 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제2종

- CNG/LPG 자동차,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제3종

- 차기(次期)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 휘발유자동차:ULEV, SULEV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 경유자동차:현행기준 대비 Nox 30~50%, PM 50~80% 저감시
- 가스자동차:현행기준 대비 Nox 25~50%

이상 저감시

IV-2. 저공해자동차보급 정책수단

◇ 저공해자동차 의무판매 제도

· 수도권특별법에 의거, 자동차제작사는 수도권내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판매

☞환경부에서 보급비율을 매년 고시

· 05년도 보급비율 : 1.3% (승용 및 화물차), 12% (버스)

· 적용대상 :수도권내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수량이 3,000대(상용차의 경우 300대) 이상인 자동차제작사

☞현대/기아, 르노삼성, GM대우 등 국내 7개 제작사와 스카니아, 도요타의 2개 수입사가 해당

· 05년도 보급비율을 달성할 경우 수도권내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는 약 27,000 대 수준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제도

- 수도권특별법에 의거, 수도권내 차량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로 차량 구매시 구매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함

◇ 저공해자동차 표지 운영

- 소비자가 저공해자동차 신규 등록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하여 차량에 부착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경차 수준의 차량 운행 인센티브 부여

- 혼잡통행료 면제, 도심내 무료주차, 주차 우선권 부여 등
- 향후 구입보조금 지급, 세제지원 등 구매/운행 단계의 인센티브 확대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제도

- 차종별/모델별로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서 친환경자동차의 구매를 유도
- 매년말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등급분석 결과를 공개

IV-3.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

◇ 전기이륜차

- 휘발유 대신 전기를 충전하여 운행하는 50cc 미만 스쿠터
- 무배출, 저소음, 동급성능, 유지비 저렴
- 수도권내 공공기관 대상 300대 보급
- 대당 100만원 차액보조

◇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 04년 경찰청등에 50대 보급
- 05년 수도권내 공공기관 대상 350대 보급 계획

- 대당 2,800만원의 차액지원

- 배출가스 30%, 연비 50% 개선
- 향후 물량확대 및 연료전지 자동차 등 차종 확대

◇ 저공해 경유자동차

- 제3종 저공해 경유자동차
- 마을버스, 택배, 운송업
- 대당 7백만원의 차액지원
- 총 650대 보급계획

◇ CNG 버스

- 2010년까지 CNG버스 2만3천대 보급 (총 전소 400기) : 2,250만원/대 가격보조
- 천연가스차량 교체대상 확대(5톤 청소차, 통학버스 등)

IV-4. 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사업

◇ ECO-STAR Project

- 과제명: 무저공해 자동차 사업
- 총괄부처: 환경부
- 사업기간: 2004.12~2011.5
- 투입예산: 650+ 그원
- 목적: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 저감
- 추진과제
 - 유로-4 및 유로-5 수준의 경유차용 후처리 기술 개발
 - ULEV/SULEV 수준의 LPG자동차 개발
 - 저공해자동차 원천기술 개발

◇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사업

- 과제명: 미래형자동차 기술개발사업
- 총괄부처: 산자부
- 사업기간: 2004.7~2014.6
- 투입예산: 6,694억원(민간: 3,347억원)
- 목적: 세계의 환경, 안전규제에 대응하는 지능형 미래형 자동차 개발
- 추진과제
 -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
 -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 지능형 안전시스템, 통합제어 시스템 개발